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손홍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11.

발 의 자 : 손홍섭, 권기만, 김성현
김익수, 박세진, 박주연,
윤영철, 정하영, 김정곤
윤종호

1. 제안이유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개인 및 법인·단체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사회공헌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 7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 사.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사회공헌장(社會貢獻狀)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실·과·소장, 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구미전자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명 이내의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5. 사회공헌 각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공헌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사회공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공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5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5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